

# ICID 세칙

## ICID By-Laws

김 주 창\* 역  
Kim, Ju-chang

### 제 1 장 서 문

#### 1.1 세칙의 제정

이 세칙은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의 정관에 있는 규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국제 집행위원회(IEC)가 제정하였다.

#### 1.2 세칙의 수정

집행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ICID 업무의 관리와 집행위원회 임무의 수행에 적합하고 편리하게 세칙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시로 추가, 폐지, 수정 또는 변경시킬 권리를 갖는다. 세칙은 정관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 제 2 장 임원의 선거

#### 2.1 임원위원회

집행위원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명예사무총장은 임원회의를 구성하고 집행위원회의 직전에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세칙 제2장에 따라 모든 지명건에 대해 검토하고 세칙 2.7에 기술한 검토사항에 따라 임원의 공석을 채우는 것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추천을 한다. 집행위원회는 임원위원회의 추천을 검토하여 공석을 채워야 한다.

#### 2.2 공석의 통지

집행위원회의의 확정일 7개월 전에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시에 공석이 되는 회장직과 부회장직을 모든 국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과거에 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국가의 목록을 포함시킨다.

#### 2.3 국가위원회의의 지명

국가위원회는 원하는 경우 집행위원회의의 개최일 4개월 전까지 중앙사무국에 도착하도록 지명서(집행위원회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명된 자는 해당국의 국민이어야 하고 이 지명서에는 지명추천의 배경과 지명된 자의 확인서, 이력서, 세부특성, 자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사무국에 수집된 지명은 세칙 2.3과 2.4에 따라 집행위원회의의 의제에 제시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가 연기될 경우에는 의제에 제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집행위원회의의 4개월전에 수령한 지명은 검토하여야 한다.

#### 2.4 지명진술서

규정된 양식에 따른 지명과 함께 국가위원회는 또 지명된 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명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의 정부

\*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연구위원

/기관은 나의 입후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고려한 후 ICID 회장/부회장직에 대한 나의 지명에 동의합니다. 선출되는 경우는 ICID 정관에 대해 성실하고 나의 최선의 능력으로 이 정관을 보존, 보호하고 지키며 지지하겠습니다.”

**2.5 회장에 의한 지명**

회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어느 국가위원회에 회장 또는 부회장직의 공석에 대해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지명은 완전한 이력서와 기타 특정사항을 다음에 설명한대로 문서로 만들어 집행위원회의에서 실제로 그것을 심의할 일자의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중앙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가 연기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가 실제로 개최되는 날의 1개월 이전에 접수되어야 한다.

**2.6 문서에 의한 지명**

세칙 2.3과 2.5에 따라 문서로 제출된 지명만이 선거에 유효하며, 모든 지명과 지명된 자의 이력서와 진술서(세칙 2.4)는 검토와 추천을 위하여 표준화된 양식으로 임원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관련 국가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전에 각 국가위원회에 이력서를 송부할 수 있다.

**2.7 임원위원회의 추천**

다음은 임원위원회가 회장과 부회장의 선거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추천을 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 1) 행정상의 필요와 정관의 요구에 따라서 10인의 임원(회장 1인, 부회장 9인)은 가능한한 지리 및 지역적으로 공평하게 그리고 여러 참가국에 나누어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직(회장 또는 부회장)을 가질 수 없으며, 어느 지리 및 지역도 청상상태에서는 회장직을 포함한 전체 임원의 적당한 몫을 초과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 2) 기간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명된 자가 ICID의 활동에 참여한 정도 : 지명된 자가 국가위원회의 활동외에 국가적, 국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국가에 의한 지역회의, 집행위원회의 또는 총회의 개최는 그 국가 지명자의 자격에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3) ICID 활동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사람의 일반적 또는 특별한 요건과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지명된 자의 자격 : ICID의 전반적인 관심, 즉 ICID가 자기 활동분야에서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 4) 지명된 자가 과거에 ICID의 일반적 업무와 기능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 및 지명된 자의 장래의 참여 가능성 그리고 예상되는 특정 지정업무의 처리 가능성
- 5) 지명된 자의 국내 그리고 국제적 지위와 책임 수준

**2.8 부회장의 선임순서**

매년 선출되는 3명의 부회장의 선임순서는 득표수에 의해 정한다.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9 사무총장의 지명**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 회장은 사무총장을 임원위원회의에서 지명하고 집행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 3 장 ICID의 업무기구 (Work Bodies)

### 3.1 일반사항

3.1.1 설치 : 집행위원회는 정관 5.7에 의거 ICID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어떤 기능의 수행 또는 특수임무를 위하여 상설 또는 임시 업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1.2 문서의 승인 : 이런 업무기구에서 나오는 문서나 결론은 문서의 형태이거나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건의한 것이든 집행위원회에서의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집행위원회에서 분명한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다.

3.1.3 종류 : 업무기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1) 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 : 업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집행위원회에 직접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기구
- 2) 위원회(Committee/ Board) : 업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결과를 경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기구
- 3) 분과위원회(Working Group) : 해당 전문분야의 선발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특정기간동안 지정된 업무를 시행하는 기구
- 4) 작업팀(Work Team) : 짧은 기간(3년 이내의 기간)에 선발된 소규모 인원으로 업무를 시행하는 기구
- 5) 특별팀(Task Force) : 2년 이내에 소수의 선발된 인원으로 해야 할 긴급한 업무를 다루는 기구
- 6) 초점그룹/지역그룹(Focus Group/ Regional Group) : 지역 중심의 활동

을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기구

3.1.4 회의 : 업무기구들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업무를 시행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1년에 적어도 1회 그리고 중간에는 통신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모든 문서와 통신의 사본은 위원장이 중앙사무국에 우송하여야 한다.

3.1.5 업무기구의 위원 : 업무기구들은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국가위원회가 지명한 대표자로 구성되며, 적절하게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업무기구의 위원장이나 ICID 회장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의 동의하에 집행위원회에 추천된다. 모든 위원들과 동일 국가로부터의 위원의 교체는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수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들은 명예직으로 ICID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위원회가 추천한 읍저버는 업무기구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발언권(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 예외)과 투표권은 없다.

3.1.6 계약위원 : 국제적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를 위해서 일하는 계약직원은 업무기구의 위원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자기 국가위원회의 대표로서 ICID 업무기구의 위원이 되는 것을 고용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이 승인에는 ICID에서 그 국가위원회의 견해만을 대표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 2) 국가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 3) 위원이 되는 업무기구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3.1.7 위원의 제한 : ICID에서 업무기구의 위원은 명예직이다. 임원위원회, 회원상임위원회, 경영위원회, 직원위원회를 제외하고 1인이 4개 이상의 기구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연속 2년 동안 회의참가/통신연락으

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은 해당 국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교체한다.

**3.1.8 결정권** : 모든 업무기구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하며 집행위원회가 그대로 또는 원하는대로 수정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 3.2 상임위원회

### 3.2.1 일반사항

**3.2.1.1 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행정과 경영을 위한 일반적 또는 특수 기술직의 임무를 갖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직접, 또는 그 위원회가 설립한 임시 업무기구를 통해 간접으로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2.1.2** 이런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전문지식과 능력을 고려하여 국가 위원회가 지명하거나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지명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새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지명된 자들 중에서 선정한다.

이런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시에 집행위원회에서 3년 임기로 임명되고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전체 6년까지 그 기능을 계속할 수 있다. 활동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은 위에서 기술한 규칙에 따라 집행위원회의에 교체할 수 있다.

**3.2.1.3 임원위원회, 경영위원회, 직원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정관 6.11과 7.3), 전략계획조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지명한다(세칙 3.2.2(5)). 기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위원회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다.

**3.2.1.4 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이들 위원회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 조언을 한다. 회장은 임원위원회와 경영위원회

의 위원장이 되는 것과 별도로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다.

**3.2.1.5** 업무기구의 활동에 참여코자 하는 명예임원은 정식위원회의 명예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3.2.1.6**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처리된 업무의 기록을 위해 위원 중에서 보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3.2.1.7** 각 상임위원회는 스스로 부회장과 회의록을 작성할 서기를 선출할 수 있다.

**3.2.1.8** 서기와 보고자가 상임위원회에 임명되면 서기와 보고자가 속한 국가위원회는 필요한 서기와 보고자를 충원할 책임을 져야한다. 회의기간이 끝나면 장래 참조할 수 있도록 업무기록을 중앙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 3.2.2 역할과 위원자격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6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역할과 위원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1) 임원위원회(Office-Bearers Committee) (세칙2.1)는 현재의 임원과 명예 임원으로 구성되고, ICID의 정책, 방향 그리고 전반적 기능에 관한 모든 중요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조언을 한다. 주요 임무의 하나는 임원의 공석을 채우는데 추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선거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2) 경영위원회(Management Board)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데 대하여 중앙사무국과 함께 책임을 지며, 집행위원회의와 다음 집행위원회의 사이의 기간에 ICID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들을 결정한다.
- 3) 재정상임위원회(Permanent Finance Committee)는 ICID의 재정문제와 ICID에 중요한 재정적 영향을 주는 업

무를 다룬다.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고 전년도 회계와 제안된 예산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조언을 하고 당해년과 장래 연도에서의 참가국의 연회비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추천을 한다. 장래 연도의 예산을 작성할 때 고려할 항목에 대해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여러 다른 업무기구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ICID의 재원을 개선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건의한다.

재정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과 9~15인의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임원(현직의 임원 우선) 또는 위원장 임명시에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종사할 수 있는 위원중에서 선택한다.

- 4) 기술활동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 for Technical Activities)는 ICID의 모든 간행물 발간을 포함한 모든 기술활동을 관장한다. 기술업무 기구의 활동과 총회, 회의, 특별회의, 심포지엄의 주제의 선정, 이들 회의에서의 기술적 결론의 정리, 장래활동을 위한 적절한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 이 위원회는 그의 모든 부속 위원회, 업무그룹, 특별팀 등에 대한 3개년 활동계획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의시에는 이 계획의 진행사항을 점검한다. 이 위원회는 사무총장, 9~15인의 선출된 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회가 이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임원(현직의 임원 우선) 또는 위원장 임명시에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종사할 수 있는 위원 중에서 선택한

다. 이 상임위원회의 부속 업무기구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5) 전략계획조직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 on Strategic Planning and Organizational Affairs)는 회원국의 수를 늘리고, 국가위원회가 국내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수시로 돕는 일을 한다. 또 ICID의 전략계획에 관련되는 문제를 다룬다. 이 위원회는 부회장의 활동영역을 조정하며, 부회장, 사무총장 그리고 최근의 전임회장등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회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현직 부회장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는 초점그룹/지역그룹이 수행한 지역활동과 젊은 전문가 그룹같은 특별그룹의 활동 그리고 지역기구를 감시하며, ICID의 장기정책과 전략 그리고 그 목적과 관련되는 세계적, 지역적 프로그램을 다룬다.
- 6) 직원위원회(Staff Committee)는 ICID의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업무과정과 직제를 검토 조정하고 중앙사무국의 기능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조언한다. 직원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경영위원회가 지명한다.

### 3.3 임시 업무기구

- 1) 임시 업무기구는 세칙 3.1.1에 규정한 대로 그리고 정관 5.7에 따라서 집행위원회가 설립한다. 기구의 임무와 구성은 필요한대로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 2) 집행위원회는 업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하고 어떤 상임위원회에 속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업무기구의 활동기간은 업무기구가 수행한 연구보고, 간행물, 워크숍, 세미나 등의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의 건의를 고려하여 단축 또는 연장시킬 수 있다. 업무기구위원의 임기는 6년 이하로 하며 임시업무기구가 수행할 업무의 기간도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임시 업무기구가 속한 위원회는 회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요청한 지명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위원 목록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 4) 임시 업무기구의 위원들은 스스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서기를 정한다.
- 5) 상임위원회의에서 임시 업무기구의 위원장은 1년에 1회씩 그 기구가 새로운 사항에 대한 워크숍/세미나 개최 계획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임시 업무기구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에서 이들 보고서에 따른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6) 임시 업무기구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그 기구가 속한 상임위원회나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 7) 정관 11.1과 11.3에 따라 정관과 세칙의 수정을 제안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특별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임원위원회의 자문기관 역할을 한다.

### 3.4 부회장의 임무

각 부회장은 전략계획조직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국가위원회의 활동을 육성 강화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회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부회장들에게 전략계획조직상임위원회의 임무외에 특정임무를 부여한다. 이런 임무 중에는 다른 국제기관과의 관계, 자기 지역에 있는 업무기구 활동에 대한 검토, 자기 지역에 있는 국가위원회와 관련해서 중앙사무국을 지원해 주는 것 등도 포함된다. 각

부회장은 각 업무기구에 직접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위의 일반적 사항외에 회장은 부회장에게 다음 임무 중 어느것이든 배정할 수 있다.

- 1) 국가위원회의 설립을 검토하고 그 국가위원회가 비정부 기구로서 광범위한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지도한다.
- 2) 국가위원회가 관개배수 관련 문제와 관심사항을 팜플릿, 포스터, 전시, 시청각 매체 등을 통해 관개배수 공동체에 널리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국가위원회를 지도한다.
- 3)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위원회간 지역협력을 증진시킨다.
- 4) 매년 자기 지역의 국가위원회를 방문하고 그들의 활동에 참여한다.
- 5) 국가위원회를 위한 관개배수의 국제프로그램을 장려한다.
- 6) 전략계획조직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문제점을 제안하고 관개배수의 지역전략 및 특별 프로그램의 재발에 기여한다.
- 7) 자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에서 ICID를 대표한다.
- 8) 상기 항목들과 ICID가 주관하는 기타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국가위원회와 연락을 취한다.

### 3.5 집행위원회의 위탁

집행위원회는 조사, 보고, 자료와 정보의 수집, 간행물 초안 제작 등을 위한 특정업무를 어느 국가위원회나 한 그룹의 국가위원회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6 특별위원회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다음 회의 사이의 기간에 긴급 업무가 있고 다음 회의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사무총장 또는 경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임원 또는 회장이 정

하는 국가위원회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특별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회장은 또 어느 국가위원회가 특정업무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회장의 이런 활동은 다음 집행위원회의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7 임무의 종결

어느 위원회나 업무기구가 배당된 업무를 완료하고 최종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면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어느 국가위원회가 업무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면 그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 제 4 장 국제집행위원회

### 4.1 의제

**4.1.1 의제 제출시기 :** 중앙사무국은 집행위원회의 의제를 항공우편으로 각 국가위원회와 임원에게 적어도 회의 일자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의제는 정확한 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포함해야 하고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의제의 내용 :** 의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이전의 보고, 이후의 ICID의 활동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로 특히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업무에 대한 연보에 들어있지 않은 활동상황을 보고한다.
- 2) 회원국 입회신청에 대한 검토
- 3) 정식으로 감사를 받은 전년도 재정결과와 금년도 예산안
- 4) 지난 집행위원회의 이후 업무기구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 5) 집행위원회가 검토할 각 위원회의 연례

회의 의제

- 6) 집행위원회, 국가위원회, 중앙사무국, 임원 또는 어느 외부기관이 집행위원회의에서 검토하도록 제안한 기술적, 행정적, 정관상의 안건
- 7) 장래의 집행위원회의와 총회 개최 장소 유치 신청 상황
- 8) 임원의 선출
- 9) 경영위원회의 보고와 건의

### 4.2 회의록

집행위원회가 끝난후에 사무총장은 주요 논의의 요점, 결정사항과 의결사항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초안 회의록은 일정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수정을 받기 위해 회람하여야 한다. 추가와 변경은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의심과 논쟁이 되는 경우는 녹음된 회의내용을 참고하여 사무총장이 해결한다. 일정기간이 지난후 사무총장은 초안 회의록에 수정이 가해진 내용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정된 회의록이 확인되면 최종 회의록이 되어 회원국에 배포한다.

### 4.3 연보

ICID 연보는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연말이 지나면 곧 발간한다. 연보는 업무기구, 국가위원회 그리고 중앙사무국이 1년 동안 수행한 주요활동의 요약을 나타내야 한다.

## 제 5 장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유치

### 5.1 유치

총회, 집행위원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주최하고자 하는 국가위원회는 예정된 총회, 집행위원회의 또는 지역회의 일자에 훨씬 앞서 집

행위원회로 유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최 국가위원회가 준비할 수 있는 적정기간을 주기 위하여 총회 장소를 적어도 4년전에, 그리고 집행위원회의와 지역회의 장소는 적어도 2년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와 별도로 개최되는 지역회의의 유치 신청을 적어도 1년전에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위원회는 또 자의로 또는 어느 업무기구의 제안을 받아 현재의 관심사항을 주제로 하는 국제워크숍, 국제심포지엄 또는 국제세미나의 유치 신청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치는 집행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 집행위원회의는 총회가 개최되는 국가에서 총회시에 항상 개최된다. 그러므로 총회 유치는 집행위원회의 유치 신청을 포함한다.

## 5.2 유치 신청 부재

총회와 집행위원회의에 대한 유치신청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회장과 사무총장이 유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3 국가위원회의 참여

모든 국가위원회의 대표자와 회원들은 집행위원회의, 지역회의 그리고 총회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위원회가 총회, 집행위원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개최코자 유치할 때는 자기 정부와 협의하여 모든 참가국의 국민이 참가 가능함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것은 총회, 집행위원회의 또는 지역회의의 장소를 결정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 5.4 장소의 순환

집행위원회가 유치 신청을 검토할 때는 총회와 집행위원회의를 여러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같은 지역내에서도 다른 국가로 돌려가며 장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 5.5 미정 유치 신청

집행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유치신청은 해당 국가위원회가 원하면 다음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의에서 다른 유치 신청과 함께 검토하도록 미결로 남겨둘 수 있다.

## 5.6 검토하여야 할 장소

집행위원회의에서는 집행위원회의의 의제에 들어있는 총회, 집행위원회의 또는 지역회의의 장소만을 검토하여야 한다.

## 5.7 유치신청 보완

집행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유치 신청이 승인된 국가위원회가 어떤 사정으로 그 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어느 국가위원회에 유치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여 회의 장소와 날짜를 확정할 수 있다. 이것이 안되는 경우는 사무총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중앙사무국에 있는 곳에서 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한다.

## 5.8 회의개최 계획

총회, 집행위원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개최하도록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국가위원회는 정확한 회의 일자, 장소 그리고 총회, 집행위원회의 또는 지역회의, 전시회 개최(개최할 경우), 관련 시찰여행 등의 세부계획을 정하여 집행위원회의와 지역회의의 경우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총회의 경우는 일반적인 계획을 만들어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회식, 폐회식, 기타 행사 등에서의 연설 등을 포함한 총회의 세부계획은 사무총장과 주최 국가위원회가 결정한다. 총회, 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을 위해 주최 국가위원회에 내는 금액과 중앙사무국에 배분할 금액은 집행위원회가 계획을 승인



할 때 결정하여야 한다.

**5.9 주최 국가위원회의 기타 의무**

**5.9.1 총회, 심포지엄, 특별회의, 세미나 등 :** 수시로 제정될 수 있는 규칙외에 주최 국가위원회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1) 주최 국가위원회는 총회, 특별회의, 심포지엄 등의 보고서 인쇄 개시일 전에 주최 국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인쇄 부수를 중앙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최 국가위원회는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주최 국가위원회는 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이 총회, 집행위원회의 그리고 업무기구의 회의 기간 전·후·중에 필요로 하는 현지 사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현지 사무지원의 내용은
  - 가) 속기사, 타자수 또는 워드프로세서
  - 나) 문서 복사 및 배부
  - 다) 총회, 특별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그리고 집행위원회의 중 영어, 불어 동시통역
  - 라) 총회, 집행위원회의, 기타 회의 및 시찰여행 기간 중 영어, 불어 통역 제공
  - 마) 마그네틱 테입 구입비와 통역 및 번역비용, 주최 국가위원회는 또 영어, 불어 이외의 언어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3) 주최 국가위원회는 개회식, 폐회식, 특별회의 기간 중 그리고 주요 행사시에 찍은 사진을 1셋트씩 중앙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주최 국가위원회는 시찰여행 기간중 참가자에게 배부한 모든 자료 1셋트와 방문처의 사진 1셋트를 중앙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중앙사무국 요원이 참가하지 않은 시찰여행에 대한 기록을 하여 중앙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동반가족은 제외)의 등록비는 면제하여야 한다.
- 6) 중앙사무국이 초청한 각 국제기구의 대표 1인은 등록비를 내지 않고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세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CID가 상호협정을 맺은 국제기구의 회장과 1인의 대표(그들의 부인 포함)는 등록비를 내지 않고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찰여행비는 그 여행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지불하여야 한다.

**5.9.2 집행위원회의 :** 수시로 제정될 수 있는 규칙외에 주최 국가위원회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1) 주최 국가위원회는 개회식과 시찰여행시 방문한 주요시설에서 촬영한 사진 1셋트씩을 중앙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중앙사무국이 초청하고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FAO, IIMI, UNESCO, UNDP, UNEP 그리고 세계은행과 기타 국제기구의 대표 1인은 등록비를 내지 않고 참가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는 매년 등록비를 내지 않고 초청받을 사람의 목록을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집행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 3) 주최 국가위원회는 집행위원회와 업무기구의 회의 기간 전·중·후에 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이 필요로 하는 현지 사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 4) 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동반가족은 제외)의 등록비를 면제하여야 한다.

**5.9.3 총회, 심포지엄, 특별회의, 세미나 등에서 주최 국가위원회 이외의 국가위원회의 의무와 중앙사무국의 의무 :** 총회와 부속 기술회의의 각 참가자는 총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집을 포함한 보고서(부분. 1) 1셋트를 받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등록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ICID는 국가위원회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를 발간한 중앙사무국은 각국의 국가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참가예정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총회 후의 보고서(부분 2)는 총회 후에 배포한다.

5.9.4 보고서의 배포 : 보고서(부분1)를 총회 참가예정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국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 1) 각 국가위원회는 될수록 일찍(총회와 부속 기술회의의 보고서 인쇄 시작전에) 중앙사무국에 참가예정자와 기타 소요를 위한 필요부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 후 국가위원회는 중앙사무국에 대하여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2) 보고서(부분 1)가 발간되면 중앙사무국은 각 국가위원회에 이미 신청된 소요 부수를 송부한다. 만약 소요부수 신청이 늘어날 경우 국가위원회가 요청하면 항공요금과 보통요금의 차액을 국가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항공소포로 송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한다.
- 3) 중앙사무국이 국가위원회에 직접 송부한 부수와 국가위원회의 요청 또는 참가 대표자의 요청으로 총회 장소에서 어떤 개인에게 준 부수에 대해서는 국가위원회가 전적으로 지불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배포한 보고서의 비용을 되돌려 받지는 못한다.

## 제 6 장 간행물

### 6.1 정기 간행물

연보, ICID 회지 및 소식지는 ICID가 재정지원을 한다. ICID가 주최한 현재의 관심사

를 주제로 하는 특정 보고서와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타 ICID 간행물은 보통 자금으로 한다.

### 6.2 특수간행물

세칙 6.1에 설명한 간행물 외에 각 총회의 보고서와 총회에서 정기적으로 계획된 기술회의의 보고서, 그리고 모든 기타 간행물은 특수간행물(총회 간행물과 특별 기술간행물로 구성됨)이라 하고 집행위원회의 특별승인을 받아서 부담한다. ICID의 로고 사용에 대한 명세와 기타 상세내용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이런 승인을 할 때는 이와 관련하여 중앙사무국에서 요구되는 특수 소요인원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도 승인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또 이 비용을 부담할 방법도 승인하여야 한다.

### 6.3 증정본

중앙사무국은 증정본을 다음과 같이 배포한다.

- 1) 정관 5.8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가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대로 수시로 ICID 회지, 문헌목록 및 연보를 받으며, 총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기술회의의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총회 보고서와 모든 특수간행물 각 1부를 받는다.
- 2) 총회 개최 국가위원회 : 총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기술회의의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총회 보고서 10부
- 3) 임원 : 모든 간행물 각 1부
- 4) 전 임원으로 소속 국가위원회가 현재 회원으로 활동할 경우 : ICID 회지와 특히 요청하는 간행물 각 1부, 단 요청한 간행물은 3년후 재신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됨

- 5) 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모든 위원 : 그들에게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만큼 증정
- 6) 논문 및 기사의 저자 : 총회, 특별회의와 심포지엄에 제출된 논문 그리고 ICID 회지 또는 기술연구보고에 수록된 기사의 별쇄 10부, 논문 또는 기사가 간행된 ICID 회지 또는 기술연구보고 1부
- 7) 특수간행물의 저자, 편집자 : 특수간행물 3부
- 8) 패널 전문가 : 해당 주제보고서 1부

#### 6.4 판매가격

ICID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재정상임위원회가 특별한 경우는 사무총장의 제의에 따라 검토 확정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최 국가위원회가 발간하는 워크숍, 심포지엄, 기술회의 그리고 지역회의의 간행물 판매가격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주최 국가위원회와 관련 업무기구가 결정하고, 이것은 그런 행사에 대해 규정된 등록비 중 중앙사무국의 몫을 포함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간행물의 가격을 제안해야 한다.

- 1) 예상 또는 검토된 비용추정(재료비, 인쇄비, 중앙사무국 편집비, 우편료, 운송비, 기타 간접경비 및 실비 포함)
- 2) 국가위원회, 임원 그리고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임원에 대한 증정분을 준 후에 4~5년의 판매기간에 전체 비용을 회수
- 3) 예상 판매기간보다 더 오래동안 보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유금액. 이것은 가능한 이익이 남는 것을 피한다는 의미이다.
- 4) 예비비에서 가져온 선수금을 보충하기 위한 일정 여유금액; 3)과 4)의 여유금액은 사무총장이 제안하고 집행위원회가 재정상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검토 후 승인한다.

- 5) 총회 보고서는 가능하면 세칙 5.9.3 및 6.3에 지정된 수요를 충족한 후 총회가 끝난 후에 판매할 수 있다. 이때의 판매가격을 다음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 등록비의 중앙사무국 몫에 12%를 더한 것
  - 중앙사무국에 의한 우편발송비는 임원, 국가위원회 그리고 그 회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한다.

발간후 5년이 지나서도 판매되지 않은 ICID 회지와 연보는 모두 사무총장의 명에 의해 장부에서 삭제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각 경우별로 적절한 부수를 남겨둘 수 있고 남겨진 간행물은 사무총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배의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남은 간행물에 대해서 사무총장은 각 경우별로 판매되지 않은 부수를 파기할 시기와 보존부수 그리고 보존분의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 제 7 장 회비 및 재정

### 7.1 통화

회비는 수시로 ICID의 연 경상지출을 참작하여 미 달러 또는 다른 통화로 정해야 한다.

### 7.2 탈퇴

ICID에서 어느 국가위원회가 탈퇴하는 것은 탈퇴신청이 들어온 해의 12월 31일에 발효한다. 탈퇴하는 국가위원회는 그 해의 회비를 완전히 지불할 의무가 있다.

## 제 8 장 기술회의

### 8.1 실행지침

중앙사무국은 기술회의, 총회, 특별회의, 심

포지엄 및 세미나의 실행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 지침은 ICID의 각 업무기구에 의해서 정관 8과 합치하도록 수시로 보완되어야 한다.

## 제 9 장 회원신청 양식

### 9.1 양식

새로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가 제출할 신청서의 양식은 <부록 1>과 같다. 이 양식을 기입하고 국가위원회 회장(국가위원회가 조직된 경우)이나 정부의 관련기구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어느 국가의 잘 알려진 기술기관이 그 기관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한 경우 재량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 제 10 장 총회에 비회원국 참가

### 10.1 목적

ICID는 주최 국가위원회와 중앙사무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비회원국의 국민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 전반적인 목적은 세계의 관개, 배수, 홍수조절 분야의 모든 관련자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ICID의 목적을 달성하며, 세계 모든 국가가 혜택을 받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 10.2 참가의 조건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조건외에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 1) 세칙 10.1에 의해 참가가 허용된 비회원국 국민은 개인이든, 정부 대표이든, 개별 기구이든 회원국 국민에 대해 정해진 등록비의 1.5배를 내야 한다. 추가된 등록비의 반은 중앙사무국

에 송금해야 하고 나머지 반은 주최 국가위원회가 소유한다.

- 2) 비회원국에서 온 개인이나 기술기구의 직원은 논문이 중앙사무국에서 적절한 절차로 접수된 경우 총회시에 토의할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3) 비회원국의 국민은 Review Committee에 참석할 수 없고 개회식, 폐회식 그리고 행사시에 연설을 할 수 없다.
- 4) 비회원국 국민은 그들이 미리 소견, 논문, 노트, 제안들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만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 5) 비회원국의 국민은 회원국 대표들을 우선한 후에도 숙박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총회와 연결된 시찰여행에 참가할 수 있다. 시찰여행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비회원국 국민은 소요 금액을 미리 지불하여야 한다.

## 제 11 장 ICID 활동에 비회원국 개인의 참가

### 11.1 회비의 지불

ICID의 정관과 세칙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승인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수시로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회비를 지불하고 ICID가 허용할 때 ICID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 11.2 개인

참가하는 개인은 회원국의 국민처럼 총회에 대한 통지를 받으며 총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집행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 개인은 총회 간행물이 발간되면 각 1부씩 받고 ICID 회지와 기술보고서에 신도록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 보고서를 제시할 수 있다.

11.2.1 세칙 11.1조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ICID 여러 간행물 발간에서 요구되는 기술정보와 자기 국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3 기관

세칙 11.1에 설명한 참가기관은 총회에 대한 안내서를 받으며 1인 내지 수명의 대표단을 보낼 수 있고, 이들은 회원국의 참가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런 기관은 집행위원회의에 대표자를 참석시킬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이런 기관은 ICID가 발간하는 간행물 증정분을 1부씩 받는다. 그리고 국가위원회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간행물을 더 구입할 수 있다. 또 이 기관은 세칙에 따른 제한범위 내에서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기관은 ICID의 여러 간행물 발간에서 요구되는 기술정보와 자기 국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4 집행위원회에 의한 정지

상기 세칙 11.1~11.3에 불구하고 집행위원회는 이들의 참가가 ICID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어느 때든지 개인이나 기관이 ICID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 제 12 장 기타

### 12.1 회의 결과 보고

ICID의 비용으로 어떤 비ICID 회의에 참석한 임원 또는 개인은 그 회의에서 배포된 서류와 간략한 회의 보고서로 논의사항, 도출된 결론 또는 추천사항 등을 회의후 될 수록 빨리 중앙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회의에 관한 서류는 도서관에 보관되며 보고

서는 ICID 회지나 책자에 게재하여 국가위원회가 정보를 얻도록 한다.

## 제 13 장 회비연체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제재

### 13.1 2년 연체

2년 이상 연체(당해연도 제외)된 국가위원회는 연체 회비를 낼 때까지 임원 및 업무기구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3.2 3년 연체

3년 이상 연체(당해연도 제외)된 국가위원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1) 상기 세칙 13.1에 따른다.
- 2) ICID에서 문서나 보고서를 받을 수 없다.
- 3) 집행위원회에서 투표권이 상실된다.
- 4) ICID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되어 집행위원회, 총회, 지역회의 등에 참석할 때 비회원국으로 취급하여 등록비를 50% 더 내야 한다. 추가된 등록비를 그 반을 주최 국가위원회가 중앙사무국에 송금하고 나머지 반은 주최 국가위원회가 소유한다.

### 13.3 제재의 중지

연회비를 연체하고 있는 국가위원회는 정관 5.8에 따라 근거있는 타당성에 의거 특별요청으로 제재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재 중지신청이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되었음과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중지기간을 사무총장이 관련 국가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제재중지 효과가 발휘된다.

<부록 1>

## ICID 회원 신청 양식

본인은 \_\_\_\_\_ 정부/국가위원회를 대표하여 \_\_\_\_\_ 의 국제관개배수위원회  
회원가입을 신청함

\_\_\_\_\_ 정부/국가위원회는 국제관개배수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되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 정관과 세칙에 규정된 절차와 규칙의 준수
- 정관과 세칙에 제시된 의무의 수행
- ICID의 비용 분담을 위해 국제집행위원회가 결정한 회비 납부

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우리의 대표 또는 국가위원회의 주소는 다음과 같음

이름 :

주소 :

P.O. BOX :

국가 :

우편번호 :

전화 :

팩스 :

E-MAIL :

ICID 정관 4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정관을 동봉함(국가위원회의 정관이 작성중이므로 확정되는  
대로 빨리 중앙사무국에 제출하겠음)

\_\_\_\_\_ 정부/국가위원회는 \_\_\_\_\_ 년도부터 유효한 회원가입을 요청함

집행위원회가 연회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수치(ICID세칙 부록 2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를 아래에 제시함

연간 관개면적(ha): \_\_\_\_\_

배수 및 홍수보호 면적(ha): \_\_\_\_\_

계(ha): \_\_\_\_\_

국가가 부담하는 UN회비의 UN의 전체 비용에 대한 백분율: \_\_\_\_\_

일자 :

장소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서명 :

(직인이 있으면 찍을 것)

〈부록 2〉

### 각 회원국의 관개면적과 배수면적 보고서의 기준

수혜면적은 다음 1) 2)항의 제목에 대해 구함

1) 관개

2) 배수

각국의 중요도를 계산할 목적으로 수혜면적을 1)+2)로 한다.

- 관개 : 기존시설에 의해 관개 가능한 면적과 장래 5년 이내에 관개 가능하게 되는 면적, 여기서 관개가능이란 관개시설의 관할 면적을 말하며 단순히 매년 관개되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관개 가능면적은 순면적만을 의미하며 수로, 도로, 건물 등의 부지는 제외함
- 배수 : 농업목적으로 어떤 인공적 배수시설에 의존하는 면적과 자연하천의 유지, 개량에 의존하는 면적

(1) 한가지 형태 이상의 배수방법이 함께 쓰이는 면적은 한가지만 계산하여야 함

(2) 관개되고 또 배수도 되는 면적은 관개면적에 포함시키고 배수에 넣지 않음(1회만 계산)